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사회공헌장 수여 방안을 구체화하고 사회공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회공헌장 수여 방안 구체화(안 제4조 ~ 안 제5조)
- 사회공헌위원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변경(안 제6조제3항)
- 사회공헌지원센터 설치,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12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없음.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 합 의 :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 검토 결과,

- 기업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민간자원 상호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종합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공헌지원센터 설립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사례가 없음.
- 사회공헌장 수여 방안을 구체화하고 사회공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 공헌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나, 광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